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5년 1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개인회생절차

Q **갚기 힘든 빚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빚을 잘 청산하여 재기하고 싶은데 "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개인파산" 및 "개인워크아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A "개인회생"이란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3~5년간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로서, 소득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개인파산", 일정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여 최대 10년 동안 나누어 갚는 "개인워크아웃"과는 운영주체, 대상채무액 등에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 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

"개인파산" 및 "개인워크아웃"제도와의 비교

-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 사건유형별 절차안내-개인파산/회생].
-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채무가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연장, 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참조].
- 각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 조정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https://www.ccrs.or.kr), 채무조정-채무조정제도 비교 참조].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무자	소득이 있는 상환 불능 채무자	소득이 없는 상환 불능 채무자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자
대상채무	제한 없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대상 채무액	무담보 10억	제한 없음	무담보 5억
변제기간	담보 15억 3년~5년	–	담보 10억 10년 이내
채무감면	변제 기간 동안 일정 월 변제액 납부 후 잔여 채무 면책 (원금감면 평균 70%)	재산 처분하여 변제 후 잔여 채무면책 (원금감면 100%)	채무 조정 후 장기 분할 상환 가능(이자 전액감면, 원금감면 평균 41%)
보증인 독촉여부	독촉 가능		독촉 불가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 홈페이지에서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빚 때문에 힘들어 개인회생제도를 권유받았는데요, 이 제도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빚을 지고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률상 자격제한 등 불이익은 없지만,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공공정보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개별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서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해야 할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및 제305조제1항 참조).

KOR 법 제 처 www.klaw.go.kr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 다음과 같이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2호·제3호 및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효과

■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공인회계사, 변호사,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는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변호사법」 제5조제9호, 「민법」 제937조 및 제1098조).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 통보를 받은 한국신용정보원은 그 채무자의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8조제1항제1호 및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제1항제1호 참조).

■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어 면책결정을 받거나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변제하는 등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공공정보로 관리되므로, 개별 금융기관과의 카드 발급이나 대출과 같은 신용상의 거래에서 일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제1항제8호 및 별표 1 참조).

Q 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과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금액 간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서 "①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제1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후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의2제1항·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안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및 제596조제2항제1호 참조).

■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조사확정재판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후단).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개인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개인회생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3항).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자는 법원이 정하는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며, 법원은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4항).

■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해야 하며, 이 결정에서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5항).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해당 목록에 기재된 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1항).

■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3항 참조).

Q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데 건강이 악화되어 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이 당분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거나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변경

■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및 제91조).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

■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해 인가결정을 하고, 채무자는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2항, 제614조, 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

■ 법원은 채무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 신청(특별면책 신청)

■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나,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것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위에 따른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면책 결정

■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Q 사업이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빚은 가게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인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이 가능할까요?

A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무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비면책채권

■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 단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 원천징수하는 조세
  -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KOR 법 제 처
www.moleg.go.kr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

■ 다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

-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 원천징수하는 조세
  -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 위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제475조 및 제476조).

키워드 개인회생, 회생절차, 개인파산, 워크아웃, 연체정보, 신용정보, 채무조정, 신용회복, 변제계획인가결정,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조사확정재판, 변제계획안 변경, 특별면책, 개인회생 면책결정, 비면책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